

3.1.1 위원회설치규정

제정 1999. 08. 27.

개정 2009. 09. 07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이라 한다) 직제 규정에 의하여 대학행정의 전반 및 발전적인 중
요사항을 예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,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
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치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획
연구처에 요청하여야 한다. 기획연구처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
2018.07.26.>

제4조(구성) ① 각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각 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
다.

제5조(회의) ① 각 위원회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
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)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